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448 |
|----------|-----|

2023년 2월 2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2월 6일, 이영실 의원 외 19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6조¹⁾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 목 차 | 주 요 내 용 |
|-----------|---|
| 제1조(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제2조(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민간단체”를 정의함. |
| 제3조(지원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 제4조(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 사업을 규정함. |
| 제5조(포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제6조(시행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 법 제6조제2항에서 상기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

1)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음.

- 참고로, 2023.2월 기준 총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6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표 2] 참조)에 있음.

[표 2] 타 지방자치단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2. 기준)

| 연번 | 구분 | 자치단체 | 제정일 | 조례명 |
|----|--------|-----------|-------------|-------------------------------|
| 1 |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 2020.11.12. |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 2 | | 대구광역시 | 2019.10.30. |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 3 | | 대전광역시 | 2017.12.29. |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
| 4 | | 충청남도 | 2022.10.18. |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5 | 기초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
| 6 | | 경기도 구리시 | 2019.10.11. |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 7 | | 경기도 성남시 | 2020.9.28 |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 8 | | 경기도 수원시 | 2022.2.7. |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 9 | | 경기도 안성시 | 2020.3.6. |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 |
| 10 | | 인천광역시 서구 | 2019.11.18. |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
| 11 | | 충청남도 당진시 | 2021.7.30. |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 12 | | 충청남도 서산시 | 2019.5.31. |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 13 | | 전라남도 순천시 | 2021.11.10. |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14 | |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2.22. |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

■ 조례안 주요조문별 의견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물환경 보전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먼저,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 보전활동”에서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는 것(법 제2조제1호)으로,
 - 이에 대한 오염 및 훼손을 억제하거나, 이미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의 활동을 “물환경 보전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의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²⁾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³⁾에 따라 민간단체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2)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안 제3조, 제4조)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먼저, 안 제3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때,

- ①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②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③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추진 능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물산업 보전활동 사업을 ①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②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③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④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상기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조치라 사료됨.
- 다만, 현재 서울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27조⁴⁾에 근거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 수질보전 홍보·교육, 하천구간 내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한강유역의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인정되는 사업⁵⁾에 대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⁶⁾’을 추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5)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제11조(사업내용)
①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비점오염원 제거 또는 저감, 하천구간 내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한강유역의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도랑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6) - 지원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진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의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포상 (안 제5조)

제5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시장이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에서는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등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민간단체가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할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임.

-
- 지원예산 :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 지원방법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지원(환경부)

[표 3] 안 제5조 및 제6조 수정의견(안)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안) |
|---|---|
| <u>제5조(포상)</u> <p>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 <u>제5조(평가 및 포상)</u>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u>제6조(보조금의 반환)</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

5) 시행규칙 (안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본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사업이 불성실하게 운영되거나 지원된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환수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448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2월 28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할 수 있음. (안 제5조제1항)
- 나. 시장은 지원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6조의 조 번호를 제7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
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u>제5조(포상)</u></p> <p>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제6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u>제5조(평가 및 포상)</u>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u>제6조(보조금의 반환)</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p><u>제7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 |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